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859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17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통합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, 위원 중 일자리 담당국장의 직위를 정비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가. 추천 위원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(안 제11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2항제2호 중 “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서울특별시 일자리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”을 “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」 및 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」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</p> <p>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p>	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~③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개정안과 같음)</p>

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1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
2.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

<p>〈신 설〉</p>	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직업교육훈련 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교육훈련에	<p>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(개정안과 같음)
--------------	---	---

식견과 전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
2.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
3. 서울특별시 일자리 기획단장 및 재정기획관

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

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〈신 설〉 제12조(위원의 수당 및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3.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
4. (개정안과 같음)

③~④(개정안과 같음)

제12조(개정안과 같음)

<p>제10조(시설사용료 등)</p> <p>① 수탁자는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·징수는 운동장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를 따른다.</p> <p>제13조(시설사용료 등)</p> <p>① 수탁자는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위탁한 직업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승인과 사용료 부과·징수는 운동장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시설에 한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개정안과 같음)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중 “제2조제11호”를 “제2조제10호”로 하며 제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」 및 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

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
2.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이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직업교육훈련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훈련에 식견과 전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3.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
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

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수당과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5조(입학자격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입학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시설에 입학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」 및 「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」 등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교육훈련생</p> <p>제10조(통합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 <u>시장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1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의 합리적 운영 및 통합관리 지원에 관한</p>

사항

2. 새로운 직업교육훈련정책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직업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사항

〈신 설〉 제11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직업교육훈련 관련 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관련기관 대표 등 직업교육훈련에 식견과 전문성, 경험이 풍부한 자

2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
3. 서울특별시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재정 업무 담당 국장

4.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원장

③ 위원장은 외부 위원중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〈신 설〉 제12조(위원의 수당 및 여비)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

여비에 관한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시설사용료 등) ① ~ ② (생략)

제13조(시설사용료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